對 外 秘

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

2015. 11. 법원행정처 차장

1. 검토 배경

▣ **19대 국회 법률안 통과를 위한 최후의 법률안 심사 일정 도래**

● 19대 국회 12. 9. 정기국회 종료로 사실상 활동 종료 예상

● 11월 1달 동안 진행될 법사위 1소위 본격적 법안 심사의 장에서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모든 역량 집중 투입해야 할 상황

- 11월 30일 1소위에서 본격적 법안 심사 예상

▣ **그러나 여전히 입법추진환경에 부정적 외생 변수 상존**

● 특히, 여당 법사위원들에게 절대적 영향력 가진 BH, 법무부의 반대 기조에 변화 없음

- 현 정국의 주도권은 여당에게 있고, 여당의 배후에서 BH가 막강한 영향력 행사하고 있음 ⇨ BH의 반대 극복 없이, 주요 법률안 처리나 정책 이슈화 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

● 이한성 1소위원장도 BH와 법무부의 반대를 이유로 상고법원 법률안을 1소위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 표명

> ☑ 이한성 의원의 중앙일보 임○○ 기자에 대한 발언 요지
>
> 상고법원 법률안을 1소위 안건으로도 상정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임○○ 기자의 질의에 대하여, **"현재 상고법원 법률안은 BH와 법무부가 반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, 안건으로 상정해봐야 통과될 가능성이 있겠는가? 먼저 BH, 법무부와 협의가 있어야 1소위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을 것이다"**

▣ **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고 입법 성공을 견인할 수 있는 최후의 협상 전략 모색해야 할 시점**

- 반대 입장의 진앙지(震央地)인 BH 극복을 위한 효과적 협상전략 수립 검토

2. 협상추진 전략

가. BH 민정수석의 기본 성향과 상고법원에 대한 입장

▣ 기본성향

- 좌고우면하지 않고, 직선적이며 자기소신이 강함
- 청탁이 통하지 않는 강직한 성격 소유

▣ BH 내 입지 등

- VIP의 핵심 참모로서 VIP 주변에서 지근거리 보필
- 인사검증, 검찰인사와 중요기획수사에 관한 한 VIP의 절대적 신임 획득
- 사법부 관련 업무 창구이자 주요 정책결정권자로서 역할 수행

▣ 상고법원에 대한 입장

- VIP의 상고심법관 임명권 침해를 이유로 확고한 반대 입장 견지
- 검사 시절부터 형성된 사법부에 대한 견제 의식과 심정적 반감도 사법부 주요 정책인 상고법원안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절대적 영향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

나. 상고법원 협상·설득의 기본 방향 ⇨ BH 민정수석의 고착된 인식을 변경할 수 있는 특단의 전기 마련

1) 현재 BH 내부에서는 상고법원에 대한 일응의 정책 결정 완료

▣ 정책 관련성 가진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반대 입장 구축

▣ 민정수석실 분위기가 법무부, 검찰로 유입 ⇨ 반대여론 확산의 중

심축으로 자리 잡은 상황

2) 민정수석의 기존 반대 입장을 번복시킬 합당한 명분과 계기 또는 실효적 압박카드가 없으면 부정적 입장 선회가 현실적 불가능

▣ [명분과 계기 1] 법원-법무부간 합의 도출

- VIP가 8월 초 CJ와의 이○○ 대법관 임명제청을 위한 오찬 자리에서, 상고법원안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법무부와의 합의 도출 주문한 바 있음
- 이후, 몇 차례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간부진간 협상 추진하였으나, 법무부의 미온적 태도로 별다른 협상의 성과 거두지 못함
- ⇨ VIP 협상지시 전달 시 하달된 메시지 내용과 법무부의 그간의 협상태도에 비추어, 12월 초까지 법무부와의 합의 도출은 기대 불가능

▣ [명분과 계기 2] 상고법원안의 문제점 극복 대안 제시

- BH 제기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하여 설득
- ① 상고심제도 개선의 불가피성과 시급성

- 상고심 현황 ⇨ 사건 폭증으로 물리적 한계 봉착

▶10여년 사이 상고사건 2배 증가: 18,600건(2002년) VS 37,651건(2014년)
- 2015년 40,000건 돌파 예상
▶2014년 기준, 대법관 1인당 연간 3,178건, 업무일 기준 하루 평균 10건 처리
- 1980년 기준, 대법관 1인당 연간 703건 처리

- 정당한 권리자 보호 지연 ⇨ 국민들의 피해로 귀결
- 선진 국가 최고법원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사건부담 ⇨ 국가적 위상을 떨어뜨리는 문제
- VIP도 8월 초 CJ와의 면담 자리에서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감 표명한 바 있고, 대다수 법사위원 및 언론도 더 이상 상고심제도 개선

을 미룰 수 없다는 점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음

● ② 헌법 개정 없이 VIP에게 상고법원 판사 임명권 부여하는 것은 원시적 불가능

- 그 대신 상고법원 판사 임명에 VIP 의사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하여 제시 ⇨ 상세 내용은 [별첨 자료 1]

  ▪ 상고법원 판사 추천위원회의 추천, 선정, 검증 과정에서, VIP와 정부, 여당 의견 충분히 반영 가능

- 제시한 대안이 현행 헌법의 틀 내에서 상고법원 판사 임명에 대한 VIP의 영향력 행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임을 강조

● ③ 상고법원을 대법원 내 설치 가능 ⇨ 상세 내용은 [별첨 자료 2]

- 별도의 조직과 시설을 갖춘 독립된 상고심 법원 신설 방안만을 고집하는 게 아님을 명확히 설명

  ▪ 상고법원 신설은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합리적 방안 중 하나 ⇨ 대법원 기능 정상화를 위한 차선책일 뿐, 사법부 조직과 기능 확대하려는 것 아님

- 대법원 내 설치할 경우, 예산·시설 소요 우려 높지 않고, 대법원 내 상고법원 판사부에 대한 대법원장의 컨트롤 충분히 가능

● ④ VIP의 상고법원 판사 임명에 대한 영향력 행사 여부를 실제 검증하기 위한 한시법 제정

- 향후 약 3년 가량 상고법원 판사 임명 과정에서의 VIP 영향력 발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, 일단 상고법원 법률안을 3년의 한시법안으로 제정

- 다만, 대외적으로는 한시법 제정 목적을 상고법원 도입 이후 국민들의 신속충실한 상고심 재판받을 권리가 실효적으로 보장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표방

▣ [압박 카드] BH 국정운영기조를 고려하지 않는 독립적, 독자적 사법권 행사 의지 표명

- 우선, 그 동안 **사법부가 VIP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**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**협조해 온 사례**를 상세히 **설명**

  -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**과거사 정립(국가배상 제한 등)**, ②**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**을 고려한 판결(**이석기, 원세훈, 김기종 사건 등**), ③**국가경제발전**을 최우선적으로 **염두**에 둔 판결(**통상임금,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반환, 키코 사건 등**), ④**노동개혁에 기여**할 수 있는 판결(**KTX 승무원, 정리해고,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**), ⑤**교육 개혁에 초석**이 될 수 있는 판결(**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**)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**VIP와 BH에 힘을 보태 옴** ⇨ 협력 사례의 구체적 내용은 **[별첨 자료 3]**

  - **국가적·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**이나 **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**에서 **BH와 사전 교감**을 통해 **비공식적으로** 물밑에서 **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**하는 역할 수행

- 그러나 사법부 최대 현안이자, 개혁이 절실하고 시급한 **상고법원 추진이 BH의 비협조로 인해 좌절**될 경우, 사법부로서도 더 이상 **BH와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**는 점을 **명확히 고지**해야 함

- 비록 **원론적 차원의 중립적 사법권 행사 의지 표방**이라 하더라도, **단호한 어조와 분위기로 민정수석에게 일정 정도의 심리적 압박은 가할 수 있을 것임**

- 아울러, 상고제도 개선 관련 **민정수석이 취해 온 그간의 반대 행보**, 이로 인해 **제도 개선 좌절**로 **사법부 및 국민 전체가 입게 될 피해와 충격**, 그리고 향후 **사법부의 결연한 의지** 등을 **여러 경로를 통해** 지속적으로 **사법부의 입장을 계속 호소해 나갈 것임을 경고**하여, 심리적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을 것임

[별첨 자료 1]

상고법원 판사의 임명절차

▣ 대법원장의 인사권 제한 방안 검토

● [개요] VIP 등 국민 대표 의견 존중 + 민주적 정당성 보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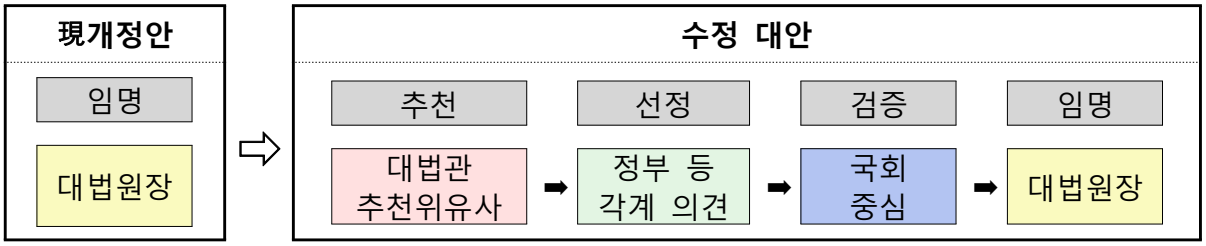

● [추천] 추천위원회

-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사회 각계 참여하는 추천위원회 구성 ⇨ **법무부장관 등 의견 반영**하여 약 1.5배수 인사 추천

● [선정] 정부 등 의견 수렴하여 최종후보자 선정

-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최종후보자를 선정함에 있어, VIP, 정부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명시적으로 도입함

● [검증] 검증절차 도입 및 검증결과 존중

- 국회 **법사위 추천 위원이 중심이 되는 '검증위원회'** 에서 최종후보자 인사검증 ⇨ 여당 의원들의 **의견 반영 및 실질적 검증** 가능

- 대법원장이 검증결과를 존중하여 최종 임명

▣ 기타 인사 관련 개선 방안

● 대법원장 임명권 분산 ⇨ 임기 2, 3, 4년 차등제(차기 대법원장이 다수 임명 가능)

● 법관 관료화 방지, **사실심 충실화** ⇨ 상고법원 이후 사실심 복귀(1심 재판)

● 상고심의 다양화, 전문성 강화 ⇨ **외부 법조경력자 임명(변호사, 교수, 검사 등)**

[별첨 자료 2]

상고법원 대법원 내 설치 방안

▣ [기본 인식] 별도의 조직과 시설을 갖춘 독립된 상고심 법원 신설 방안만을 고집하는 것 아님

-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고제도 개선의 **여러 합리적 방안 중 하나로 상고법원 신설을 제시**한 것임
- 상고법원 도입은 대법원 기능 정상화를 위한 차선책일 뿐, 독립된 법원 설치로 **사법부의 조직과 기능을 확대하려는 것이 절대 아님**

▣ [구체적 방안①] 대법원 내 별도 재판부로 설치

<대 법 원>

전원합의체	대법관부	상고법관부

- 별도의 독립된 조직을 구성하지 않고, **재판부로 구성**
- 상고법원장, 사무국 등을 설치하지 않음

▣ [구체적 방안②] 대법원 내 독립된 재판조직으로 설치

<대 법 원>

전원합의체	대법관부	상고법원		
		1부	2부	3부

- 상고판사로만 이루어진 **재판부를 묶어 별도 조직을 구성**함
- **[사례]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동경고등재판소 내 '특별지부[1]'로 규정**되어 있고, 별도의 소장, 재판관회의, 사무국을 두고 있음

▣ 대법원 내 설치 방안의 기대 효과

- 현재 **대법원의 조직 일부**를 **상고법관부로 재편**하는 방식 ⇨ 추가 **예산·시설 소요 발생 우려 높지 않음**
- 대법관부에서 사건 심사 ⇨ 대법관 심판 사건 / 상고법원판사 심판 사건으로 분류
  - 사건심사에 관한 **법무부장관·검찰총장의 의견 제출권 인정 및 존중**
- 대법원 내 **상고법관부에 대한 대법원장의 컨트롤** 충분히 **가능**
- 4심제 논란 야기하는 **특별상고도 폐지**할 수 있음

1) '지부'는 지역적 관할을 달리하는 개념이나,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동경고등재판소와 관할을 같이 하고 담당하는 사건의 종류만 다르다는 의미에서 '특별지부'라고 함

[별첨 자료 3]

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

▣ **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왔음**

▣ **❶과거사 정립**

● 과거사정리위원회 사건

- 부당하거나 지나친 국가배상을 제한하고 그 요건을 정립함

☑ **대법원 2013. 5. 16.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**

▶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보고서에 모순이 있거나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다면 **보고서만 믿고 국가 배상을 결정해선 안된다고 판시하고,**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소송에서 **소멸시효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3년으로 제한**함

☑ **대법원 2015. 1. 22. 선고 2012다204365 전원합의체 판결**

▶과거사 피해자라도 생활지원금 등 보상금을 받았다면 국가로부터 **재차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없음**

☑ **대법원 2015. 4. 17. 선고 2014다234155 판결**

▶과거사 **피해자가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았다면** 국가로부터 **배상을 받을 수 없음**

☑ **대법원 2014. 6. 12. 선고 2013다201622, 2015. 1. 22. 선고 2012다304365 판결 (광주항쟁 손해배상청구 사건)**

▶민주화보상법에 따른 **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**에는 **위자료를 포함한 피해 일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**이 있다고 보아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함

● 대통령긴급조치 사건

- 대통령긴급조치가 내려진 **당시 상황과 정치적 함의를 충분히 고려**함

☑ **대법원 2014. 10. 27. 선고 2013다217962 판결**

▶긴급조치가 당시로서는 유효한 법규였던 만큼 **이를 따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곧바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건 아님**

☑ **대법원 2015. 3. 26. 선고 2012다48824 판결**

▶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지만 긴급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**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음**

▣ ❷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

● 이석기 전 의원 사건

-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폭동과 내란을 선동한 이석기 전 의원에게 **내란선동죄로 중형을 선고**

☑ **대법원 2015. 1. 22.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**

▶전쟁이 발발하는 등 유사시에 상부 명령이 내려지면 바로 전국 각 권역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동을 할 것을 선동한 행위를 **내란선동죄로 인정**함

● 전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지위 확인 사건

- 해산된 전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이 제기한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**소 각하 판결 선고**

☑ **서울행정법원 2015. 11. 12. 선고 2015구합50320 판결**

▶헌법재판소가 '민주주의'라는 헌법적 근본적 가치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내린 정당해산심판 및 그에 따른 **국회의원직 상실 결정에 대하여**, 더 이상 **법원에서 이를 다툴 수 없다**는 이유로 원고들의 **소를 모두 각하**함

● 원세훈 사건

- **현 정권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와 직결된 사건**에서, **공선법 위반 혐의**에 대한 원심 유죄 인정 부분을 **대법원에서 파기환송**

☑ **대법원 2015. 7. 16.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**

▶원심에서 **공선법 위반 혐의**에 대한 유죄 인정 증거로 채택한 일부 디지털 증거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위 유죄 부분을 **파기환송**함

● 김기종 사건

-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에게 위해를 가한 김○○에게 **살인미수죄 등 적용하여 중형 선고**

☑ **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9. 11. 선고 2015고합253 판결**

▶피고인이 과도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 등을 찌른 행위를 **살인미수죄로 의율**하고,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사절을 심각하게 공격한 점 등 참작하여 **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**함

● 쌍용차 대책위 주최 걷기대회 사건

- 걷기대회 집회참가자들이 **4~5분 가량 도로를 점거하였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**된다고 판시

> ☑ **대법원 2015. 11. 17. 선고 2015도13782 판결**
>
> ▶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로 인해 **비록 단시간이나마 교통 방해가 있었다고 인정**하여, 무죄를 선고한 **원심판결을 파기환송**함

● 전교조 교사 빨치산 추모제 참석 사건

- **자신이 가르치는 중학생들과 학부모를 이끌고 빨치산 추모 전야제에 참석한 전교조 소속 전직 교사**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 ⇨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**체제 도전 행위에 제동**을 걺

> ☑ **대법원 2013. 3. 28. 선고 2010도12836 판결**
>
> ▶**이 사건 빨치산 추모제**는 순수하게 사망자들을 추모하고 위령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, **북한 공산집단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폭력적 방법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 한 빨치산의 활동을 미화하고 찬양하며 그 계승을 주장·선동하는 성격이 담긴 행사**이고, 피고인이 **중학교 학생, 학부모, 교사 등을 인솔하여 이 사건 전야제에 참가하고 그들로 하여금 빨치산의 활동을 미화·찬양하며 그 계승을 주장하는 내용의 발언을 듣게 한 행위** 등은 **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하여 찬양·선전과 같이 평가될 정도**로 적극적으로 호응·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

● 밀양 송전탑 사건

- 고압송전선 및 송전탑 위치 문제를 두고 **밀양 주민과 한국전력 사이의 대립과 농성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던 상황** ⇨ 한전의 주민들에 대한 **공사방해금지가처분 인용결정, 주민들의 공사중지가처분 기각결정**으로 갈등의 확산 방지와 분쟁 종식에 기여

> ☑ **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. 10. 9.자 결정문** 이유 中
>
> ▶"송전선로 공사는 **공익사업으로서, 국가 전체 전력 수급계획**에 근거한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것이고, **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할 경우 변전소의 과부하와 전력수급에 차질**이 발생한다"

● 제주 강정 해군기지 사건

-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**정부의 국방 · 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이 법**

적으로 유효함을 선언

☑ 대법원 2012. 7. 5. 선고 2011두19239 판결

▶어느 행정행위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(중략) **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**하여 (중략) 사실오인, 비례·평등의 원칙 위반,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등이 없는 한 재량권을 일탈·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.

●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전국가적 재난상황의 조기 극복 방안 제시

- 미국 9·11 테러 관련 VCF(Victims Compensation Fund)에 의한 보상 제도 벤치마킹 ⇨ 법관 등이 참여하는 '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' 에 의한 신속하고 종국적인 배상 및 보상 방안 국회에 제시

- 사법부 제시 법률안이 그대로 반영된 '4·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' 제정

▣ ❸국가경제발전 최우선 고려

● 통상임금 사건

-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단순히 포함시킬 경우 **우리 경제 전체가 안게 될 부담(약 38조 원으로 추산됨)을 최대한 고려**하여, 노사 양측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적절한 결론을 제시함

☑ 대법원 2013. 12. 18.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

▶통상임금도 정기상여금에 포함된다고 선고하면서도, **민법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소급 적용을 제한**시킴

● 휴일근로수당 중복 할증 사건

- 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시 **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 할증**하여야 한다는 것이 하급심 판결의 대체적인 입장임(대법원 계속 중인 2012다115991 사건의 원심 등 다수)

- 그럼에도, ①중복할증 시 **기업의 막대한 추가 부담(약 8조원 + 향후 매년 약 2조원)을 고려**하고, ②노사정의 자율적 타협을 존중하기 위해 **노사정위원회의 노동개혁 결과 도출시까지 대법원 판결 선고를 잠정 보류**하고 있음

●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반환 사건

- 국공립대학의 **기성회비 징수는 적법**하고 학생들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 ⇨ 국공립대학이 **10조 원이 넘는 기성회비 반환으로 큰 재정적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상황 모면**케 함

> ☑ **대법원 2015. 6. 25. 선고 2014다5531 전원합의체 판결**
>
> ▶국공립대학이 학생들에게 부과해 온 **기성회비는 교육 서비스와 학교 시설물 이용에 대한 정당한 징수**라고 판시하며, 기성회비 반환을 인정한 **원심판결을 파기환송**함

● 키코 사건

- 금융기관과 기업이 첨예하게 대립한 사건에서 **양측이 승복**할 수 있는 결론 도출

> ☑ **대법원 2013. 9. 26. 선고 2011다53683 전원합의체 판결**
>
> ▶키코 통화옵션계약이 **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**

● 한국철도공사(코레일) 자회사 법인설립등기 사건

- 철도산업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여 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**국토교통부가 발표한 '철도산업발전방안' 에 따라 추진**된 '수서발 KTX 자회사 법인설립등기' 를 **국가경제적 관점에서 허가하여 이를 둘러싼 철도노조 파업 등 분쟁·갈등 상황을 종식**시킴

> ☑ **2013. 12. 27. 대전지방법원**
>
> ▶한국철도공사(코레일) 자회사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하여 **국토교통부가 이에 대한 철도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할 수 있게 함**

▣ ❹4대 부문 개혁 중 노동 부문 관련

● KTX 승무원 사건

⁝ 공공 부문 민영화와 관련한 여러 쟁점이 관계된 사안에서 **결국 한국철도공사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**함

> ☑ **대법원 2015. 2. 26. 선고 2012다96922 판결**
>
> ▶KTX 승무원과 한국철도공사 사이에 **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부정**하고, **근로자파견관계에도 해당하지 않음**

● 정리해고 사건

-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을 위해서는 **정리해고 요건의 정립이 필요**한데, **선진적이고 유연한 기준 정립**을 위하여 노력함

> ☑ **대법원 2012. 2. 23. 선고 2010다3735 판결**
>
> ▶악기 제조업체인 **콜텍**의 정리해고를 유효하다고 봄
>
> ☑ **대법원 2014. 11. 13. 선고 2012다14517 판결**
>
> ▶**쌍용차**가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고,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,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의 협의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봄

● **철도노조 파업 사건**

- **노사 갈등의 평화적인 해결**을 위하여 파업의 법적 기준을 정립함

> ☑ **대법원 2014. 8. 20. 선고 2011도468 판결**
>
> ▶**철도공사**는 사업장 특성상 업무 대체가 쉽지 않아 사측의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, 파업을 강행하리라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**철도노조 파업은 업무방해죄에 해당**

● **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**

- **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**에 대한 사건 ⇨ 유효 여부에 따라 **향후 노동조합의 운영방식 전반에 큰 파급력** 예상(기존 단체협약의 효력 유지 여부, 사용자가 새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, 기존 노조 재산의 귀속 등)

> ☑ **대법원 2012다96120 사건**
>
> ▶금속노조 발레오전장지회(**금속노조의 산하조직**) 조합원들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**조직형태를 기업별 노조(피고)로 변경하는 결의**를 하자, 금속노조 발레오전장지회 임원 및 조합원으로서 결의에 참가하지 않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조직형태 변경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 ⇨ **2015. 5. 28. 공개변론 실시, 추후 대법원 선고 예정임**

▣ ❺4대 부문 개혁 중 교육 부문 관련

● **전교조 시국선언 사건**

-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고, **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행위가 정치적 중립을 침해할 정도**에 이르렀을 경우 국가공

무원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

☑ **대법원 2012. 4. 19.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**

▶민주주의 후퇴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**전교조 소속 교사 3명에게 벌금형**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